

#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길영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47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2월 09일

발 의 자: 김길영, 김규남, 김영철,  
김용호, 김원태, 김재진,  
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  
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 
문성호, 윤기섭, 윤종복,  
이상욱, 이종환, 이효원,  
임춘대, 정지웅, 최민규,  
허 훈, 홍국표, 황유정  
의원(24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명예시민 선정 및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으나, 이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의 역할이 부재한 실정으로 이에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후보자와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위원을 시의회(의장)에서 추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
- 또한, 명예시민증 수여를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제출토록 하여 효율적으로 시의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3조 중 후보자 추천의 주체를 “공공단체”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을 추가하여 “서울특별시의회의장, 공공단체”로 개정함(제3조 개정)
- 나. 명예시민증 수여를 위해 시의회의 동의 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함께 제출토록 함(제4조 3항 신설)
- 다.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위원 대상자를 시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잘못 표기된 단어를 수정함(제8조제4항제2호 신설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##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공공단체”를 “서울특별시의회의장, 공공단체”로 한다.

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하나1”을 “하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.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제3조(후보자 추천) <u>공공단체</u> 의 장,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	제3조(후보자 추천) <u>서울특별시의</u> <u>회의장, 공공단체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4조(수여대상자 결정) ①·② (생략) <신설>	제4조(수여대상자 결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</u> <u>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</u> <u>는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수</u> <u>여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함</u> <u>께 제출하여야 한다.</u>
제8조(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 회) ① ~ ③ (생략)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<u>하나</u>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1. (생략) <신설> 2. (생략) ⑤ (생략)	제8조(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 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<u>하나</u>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</u> 3. (현행 제2호와 같음) ⑤ (현행과 같음)

#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(후보자 추천)의 주체에 “서울특별시의회회장”을 추가하여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설정하고, 명예시민증 수여를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시의회가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개선 및 조문정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

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    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    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     김 경 명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imkmi0809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